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6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송재봉

정동영 · 차지호 · 이정헌

김교흥 · 정태호 · 이춘석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다.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라. 이사회의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 면 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마.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 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 사.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의"를 "13명의"로, "한다"를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성 및"을 "전문성, 지역성 및"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송 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 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제6항제2호 중 "개인·법인 및 단체의"를 "임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을 제외한 개인, 법인·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제10호 중 "추천에"를 "임면(任免)제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①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은 이사회의 제청 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면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한다.
- 제10조의4(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하여 사장후보 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 이내의 홀수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 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의5(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2. 진흥회의 임원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
 -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0조의6(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 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ㆍ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위 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 2.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진흥회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 있다. -----하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u>전문성</u> ④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명한다. <단서 신설>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 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및 그 밖 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신 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생략)

<신 설>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
 록되어 있는 방송 미디어 분
 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⑤----<u>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u> 통신위원회가----.
- ⑥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임원 및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 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 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 자의 사장·임원은 정치활동에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⑤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 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관여할 수 없다.

- ③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지 아니한다.
- 1.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현행과 같음)

6	

- 1. (현행과 같음)
- 2. -----임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 및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 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 송사업자의 사장 임원을 제

3.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9. (생 략)
-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 <u>추천에</u>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

외한 개인, 법인·단체의
3. (현행과 같음)
⑦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u>이</u>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
<u>야 한다.</u>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u>.</u>
10조(이사회의 기능)
 1. ~ 9. (현행과 같음)
1. 5. (包含4 在日) 10
임면(任免 <u>)</u>

<u>제청에</u>-----

11.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u>고 인정하는</u> 사항 <u><신 설></u>

<신 설>

<신 설>

<u>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u>----12.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 회에서 승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면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하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 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 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최종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 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⑧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의5(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신 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사람
- 2. 진흥회의 임원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원
-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 제10조의6(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

- 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 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다.
- 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임명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

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 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 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2.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 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 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